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2022.11.01



[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]

1. 계약기간

- 가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,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.
- 나.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.

2. 계약목적

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 또는 주야간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3. 이용정원 및 서비스 제공시간

- 가. 재가복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5일, 09:00~18: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나. 주야간보호는 일일 이용정원 43명 이내로 한다.
- 다. 주야간보호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와 더불어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주6일(설, 추석 등 특정일 제외) 08:00~18: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.
- 라. 방문요양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법령 및 절차에 의해 서비스제공(이용)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다.

4. 수급자의 자격

- 가.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
- 나.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자
- 다.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초단체장 또는 센터장이 인정한 자
- 라. 보호자의 요구 하에 주야간 기간 중 보호가 필요한 등급외자

5. 모집방법

- 가. 기관의 주.야간 입소정원은 43명이며, 방문요양은 정함이 없음으로 한다.
- 나. 이용자의 모집 : 인터넷 홈페이지, 홍보지, 플랜카드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직접 방문 상담, 전화, 이용상담을 통하여 적합한 절차를 통한 계약에 의해 이용자를 모집한다.

6. 계약자, 수급자의 의무

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1)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①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(단,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-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
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2) 수급자(보호자)의 의무

-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-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
- ④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
-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3) 신원인수인의 권리 · 의무

-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연람할 권리
- ②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
-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④ 입소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시설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
-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
-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7. 계약의 해지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1)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이 있을 때(요청은 7일전에 하여야 한다)
- 2)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3)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4)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5)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- 6)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7)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, 다만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 포함)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.
- 8)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8.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.

- 1)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- 2)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3)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
- 4)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
○이용시간별 급여비용(1일)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 등급
3시간 이상~6시간 미만	35,480	32,850	30,330	28,940	27,560	27,560
6시간 이상~8시간 미만	47,570	44,060	40,670	39,290	37,890	37,890
8시간 이상시간 ~10미만	59,160	54,810	50,600	49,220	47,820	47,820
10시간 이상~12시간 미만	65,180	60,380	55,780	54,370	52,990	47,820
12시간 이상	69,890	64,750	59,810	58,430	57,040	47,820

○ 등급별 이용료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원등급
1,520,700	1,351,700	1,295,400	1,189,800	1,021,300	573,900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

구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	6% 9%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	
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

○ 비급여 항목 비용

항목	내용	금액	비고
식비	1식 3,000원	3,000원	
간식비	1회 500원*2회	1,000원	
요청 물품	보호자, 또는 요청에 의한 물품	실비청구	